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개정일 2022. 02. 25.

시행일 2022. 03. 01.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현행(구)	개정(신)
제1장 총칙 제2조 (기능)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1.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상급학교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17. 대통령령,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제1항 제13호의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자문결과를 자문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상급학교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7. 대통령령,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제1항 제13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구)	개정(신)
제3장 위원회 선출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선출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5조(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5조(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자문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현행(구)	개정(신)
제25조(건의사항 처리)⑤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건의사항 처리)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자문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자문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자문 사항의 시행 등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8조(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자문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부 칙<2022.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